

대 만

수출현안/ 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
(2014년 5월 16일) / 홍콩aT센터

구분	핵심 내용
(*통관) (*검역) ✓ (*라벨링) (*기타)	☐ 「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규정」 신규 제정

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
☐ 주요 내용

○ 「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규정」 신규 제정

-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

○ 공고 사항

1. 시판되는 용기 또는 포장 제품은 아래 열거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했을 경우 그 용기 및 외 포장 상 알레르기 유발성 내용물 포함에 대한 경고 표기를 해야 함

(1) 새우 및 그 제품

(2) 게 및 그 제품

(3) 망고 및 그 제품

(4) 땅콩 및 그 제품

(5) 우유 및 그 제품 ; 단, 우유에서 추출된 락티톨(latitol)은 이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음

(6) 알류 및 그 제품

* 관련 상세 품목 : 붙임 1 참고

2. 상기의 경고 표기는 “본 제품은 o o이 포함됨”, “본 제품은 o o이 포함되어 있으며, 알레르기 체질자가 식용 시 부적합함”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함

☐ 시사점 / 대처 방향

- 알레르기 유발성 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포장 표기 규정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한국 농식품의 對 대만 수출 시 성분 및 경고 표기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, 관련 규정 숙지를 통한 대비가 필요함

○ 관련 웹사이트

<https://consumer.fda.gov.tw/Law/Detail.aspx?nodeID=518&lawid=583>

☐ 발표 일자/ 출처 : 2014년 3월 7일 대만 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(FDA) 공고

<붙임 1>

「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규정」의 알레르기 유발성 내용물 및 그 제품 관련 상품 예시 (시판 용기 및 포장 제품에 해당)

- 1) 새우 및 그 제품 : 각 종 새우류 및 새우류에서 추출된 키토산(chitosan), 글루코산(glucosamine) 등 성분, 새우 전병, 새우 소스, 새우 완자 등 그 제품
- 2) 게 및 그 제품 : 각 종 게류 및 게류에서 추출한 키토산, 글루코산 등 성분, 게맛살, 게 완자 등 그 제품
- 3) 망고 및 그 제품 : 망고건조식품, 망고잼, 망고 아이스크림, 망고젤리, 망고케익 등
- 4) 땅콩 및 그 제품 : 땅콩기름, 땅콩 캔디, 땅콩분말, 땅콩잼, 땅콩소스, 땅콩전병, 땅콩즙 소스류 등
- 5) 우유 및 그 제품 : 우유에서 추출한 유당, 카세인, 유청단백질(whey protein), 락토페린(lactoferrin)등 성분을 포함한 제품, 치즈, 버터, 크림, 마가린, 분유, 요거트, 요플레, 유산음료, 우유과자, 우유캔디 등 그 제품, 단 우유 추출 성분 중 락티톨(lactitol) 포함 제품은 제외됨
- 6) 알류 및 그 제품 : 계란, 오리알, 거위알, 타조알 등 각종 알류 및 알류에서 추출된 알부민(albumin) 성분 등, salted egg(잔계란), 피판, 달걀말이, 계란과자, 계란 노른자 소스, 계란 샐러드, 계란 분말 등 그 제품

* 새우, 게, 망고, 땅콩, 우유, 알류 등 6가지 항목의 알레르기 유발성 내용물 및 그 제품은 상기 1~6번까지 열거된 모든 제품에 해당하며, 또한 상기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식품업자의 실제 상품에 따라 동 표기 규정은 적용됨

* 관련 웹사이트

<http://www.fda.gov.tw/upload/133/Content/2014031216074266953.pdf>